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 <신설 2019. 7. 1.>

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

지정번호	건설신기술 제 호		보호기간
신기술 명 칭			
기술개발자	상호 또는 법인명	성명(대표자)	

기술을 전수(傳受)한 자 (신기술 사용협약자)	상호 또는 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협약기간

기술전수 현장 및 내용	기술을 전수(傳受)한 자 (총 명)	기술전수 일시 (시간)
	기술전수 현장	
	기술전수 내용	

기술전수 확인자	소속기관	직책(직급)	성명 (인)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기술개발자 (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붙임서류	1. 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. 2. 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. 3. 기타 기술전수 관련 자료(사진 등) ※ 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, 감리·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